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664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기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1.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2. 9.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30. 접수 제722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는 2012. 6. 29.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E와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404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13. 원고가 신청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D가 원고에게 5,647,381원 및 그중 3,584,319원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6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을 발령하였다. 해당 지급명령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다. 고 F(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22. 3. 30. 사망하였다.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 G이 있었다. 이들은 2022. 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22. 9.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에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지분대로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D가 과거에 고인에게서 대구 북구 H아파트 I호를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D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이 수정된 것)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목록

1.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세멘 벽돌조

슬래브지붕2층주택

1층 74.46㎡

2층 66.11㎡

세멘 부록조

슬래브지붕단층

부속건물(변소)

0.81㎡

2. 대구광역시 서구

대 132.5㎡

끝.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을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체결된 일자를 “2022. 3. 30.”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22. 3. 30.”은 고 F가 사망한 당일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민법 제1015조 본문), 등기원인이 “2022.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 D,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쯤 상속재산분할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체결일을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한다.